

협회 이모저모

■ 제33차 상임이사회

-일시 : 2001. 10. 11(목) 07:30~09:00

-장소 : 본회(14층) 대회의실

1) 재특·농특자금 상황유예 및 감면 재건의

95년도 재특 및 농특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있으나 중소병원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재특·농특자금 등 정부지원금 상황유예 및 감면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건의함.

2)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시행 통보

약사법 개정(제21조5항)으로 '모든 주사제' 가 의사가 직접조제 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2001.11.15부터 모든 주사제가 의약분업 예외대상에 포함됨을 전국병원에 통보함.

3) 약제비환수관련 법제화 추진에 관한 건의

정부가 약제비 절감방안으로 약제비를 요양급여 비용에서 환수하기 위한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고시가상환제를 실시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적인 약제비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함

■ 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규정 제정·고시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53호

· 내용 : ① 복지부장관이 월별 예탁금결정액을 매분기별로 공단과 해당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예탁금을 공단 수납계좌에 입금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출연금 내역을 공단에 통보토록함(8조) ② 공단은 정당한 사유없이 금여비용을 예탁하지 않는 시·도의 해당 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함(8조4.5항)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별 부담비율에 의한 출연금을 결정·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출연금을 예탁 기일 3일전까지 기금에 출연토록함(9조)

■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제출

· 내용: 본회 입법청원에 따라 "진료비지급 지역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자 지급" 조항 신설과 "약제비 직접지급(법 43조6,7항)" 근거 조항 삭제에 관한 의원발의안이 제출됨

■ 제30차 운영위원회

-일시 : 2001. 11. 8(목) 07:30~09:00

-장소 : 본회(13층) 소회의실

1) 의약분업 예외환자 외래조제 거부관련 조치

11월1일부터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원내조제료 부활계획이 지역됨에 따라 병원약사회가 분업예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거부를 결의한 것과 관련 회원 병원장에게 병원약사의 집단행동 자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병원약사회와 정부에 대한 호소문을 채택키로함

메토록 되어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의약품 유통거래합리화를 위해 동 규정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함

2) 국민건강보험재정전화특별법안에 대한 개선의견 제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공익성 강화 및 요양급여비용계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험자대표와 의약계대표 위원수의 형평성을 강화하며, 건강보험 대행청구단체 확대, 급여비용전산청구 의무화에 앞서 전산청구를 촉진할 정책지원과 시스템구축 투자비용 지원을 선행할 것 등의 의견을 제출함

■ 제34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

-일시 : 2001. 11. 15(목) 12:00~14:00

-장소 : 본회(14층) 대회의실



1) 의약품 유통거래 합리화 관련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건의

현행 약사법시행규칙(제57조1항7호)에 종합병원이 의약품 구매시 의약품도매업자를 통해서만 구

■ 제17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

-일시 : 2001. 11. 22~23

-장소 : 63빌딩 국제회의장



- 내용 : '정부의 보건의료정책과 선진의료 구현을 위한 정책대안' (고대법대 이상돈 교수) 특강과 '바람직한 약가제도' 와 '건강보험정책 방향개선' 을 테마로 한 주제발표 및 관리, 간호, 진료분과별 분과토의에 이어 종합토의를 함

■ 제35차 상임이사회

-일시 : 2001. 12. 6(목) 07:30 ~ 09:00

-장소 : 본회(14층) 대회의실

1) 이사 보선 및 선임

병원장 변경에 따라 후임 병원장을 이사로 보선키로 함

변경 전	변경 후
이사 최종욱(고대안산병원장)	이사 류호상(고대안산병원장)

2) 선택진료개선(안) 건의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의 80% 범위내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토록 한 규정삭제 및 주 진료의사에게 진료지원과 검사 등에 대한 포괄위임 등 관련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조항 개정을 건의함

3)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병원 범위 조정 건의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비영리법인을 포함시켜 줄 것과 중소병원 범위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이하로 확대하여 줄 것을 청와대, 보지부, 중소기업청에 건의함

4)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청원

개정 근로기준법(68조1~3항)에 여성을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킬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임산부의 경우는 근로자 동의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병원특성상 75%이상이 여성근로자이며 3교대가 기본이므로 이 규정은 병원운영에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병원근무 여성근로자의 경우 동 규정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국회에 청원함

5) 병원진찰료 외래환자 본인부담율 및 입원료 등

개선 요청

2001.7.1일 처방료가 진찰료에 통합되고 환자본인 부담금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율과 진찰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병원 외래환자 감소추세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전문과목간 진찰료 차이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며, 현행입원료가 원가에 크게 미달해 병원경영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병원진찰료 및 외래환자 본인부담율 조정과 입원료의 합리적인 상향조정을 건의함

6) DRG지불제도에 관한 건의

DRG지불제도를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강제화 할 것이 아니라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범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개별 의료기관이 DRG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함

7) 의료급여제도 개선안 제출

의료급여(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장기체불로 병원경영악화가 초래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복지부장관이 결정한 예탁금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불성실예탁 가산금과 지급지연 연체이자”를 법제화하고 국고보조금 비율을 90%로 상향조정토록 개선안을 제출함

■ 2002년도 전기 전공의시험 – 중앙공동관리 방식 첫 시행

-일시 : 2001. 12.9(일)

· 내용 : 본회가 희망하는 수련병원에 대하여 필

기시험문제를 일괄출제한 중앙공동관리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한 2002년도 전기 레지던트 전공의 필기시험이 9일 오후 2시부터 3시50분 까지 110분 동안 서울고등학교 등 전국 4개 구역별 고사장 및 지역별 공동관리군으로 구분하여 각 고사장에서 실시함. 병원신임위원회 중앙공동관리 방식을 신청한 수련병원(기관)은 모두 82개 병원, 16개 기관이며, 종전과 같은 병원별 공동관리에는 43개 병원 12개 기관이 응함



2)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요양급여후 부분 보존연한을 민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79조 채권 채무 소멸시효를 준용 급여종료 일로부터 3년으로 할 것과, 요양급여일수 연각 365일 제한을 동일 진료과중 세부진료과를 2회이상 내원했을 경우 내원일수 및 투약일수가 합산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질병별로 급여일수를 관리도록 개선의견을 제출함. 2002

■제31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01. 12. 13(목) 07:30~09:00
- 장소 : 본회(13층) 소회의실

1) 의료법개정안 법안심의 결과

2001.12.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법개정안을 심의, 현행 필수진료과목을 300병상이상은 9개로 하고, 300병상이하 의료기관은 7개로 축소하는 한편, 치과와 정신과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운데 3개과목을 필수진료과목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함